

1. 개정이유

분만 진료특성,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분만실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,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 및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완화

분만실을 신고·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,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(종합병원 제외),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료법」 제3조의5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28. ~ 2022. 12. 8.)

3) 행정규제 : 없음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제4호 가목 (1) (가) 중 “의원급 의료기관”을 “의원급 의료기관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으로 분만실을 신고한 의원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“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 및 아동·분만병원”을 “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(종합 병원에 한한다), 아동·분만병원 중 아동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(1) (다) 중 “마목”을 “바목”으로 하고, 같은 목 (1) (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라)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으로 분만실을 신고한 의원에 한한다),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(종합병원은 제외한다), 아동·분만병원 중 분만 병원 :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1 이상 확보할 것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2] 비급여대상 1. ~ 3. (생 략) 4. (생 략) 가. (생 략) (1) (생 략) (가)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, 같은 항 제3 호나목의 치과병원, 같은 법 제 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 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 병원 및 아동·분만병원: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 상 확보할 것 (나) (생 략) (다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 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	[별표2] 비급여대상 1. ~ 3. (생 략) 4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(1) (현행과 같음) (가) ----- ----- ----- ----- 의원급 의료기관(「국 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 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으로 분만실을 신고한 의원은 제외한다), ----- ----- ----- 산부인과 또는 주산 기 전문병원(종합병원에 한한 다), 아동·분만병원 중 아동병 원 : ----- ----- (나) (현행과 같음) (다)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상급종합병원: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<u><신설></u>	----- ----- (라)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으로 분만실을 신고한 의원에 한한다), 같은 법 제3조의 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(종합병원은 제외한다), 아동·분만병원 중 분만병원 :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1 이상 확보할 것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37